|  |  |  |
| --- | --- | --- |
| **외자유치 심사 관리업무와 관련한**  **상무부의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상무주무부서:  <등록자본 등기제도 개혁방안 인쇄발부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 [2014] 7호), 이하 통지라 함)와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무원 령 제648호, 이하 결정이라 함)을 관철하기 위해 상무부는 일부 외국인투자 관리업무에 대해 개선조치를 제기하는 바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외자심사 관련   (1) 외국인투자(대만, 홍콩, 마카오투자 포함) 회사(이하 회사라 함)의 초기 출자비율, 통화출자 비율 및 출자기한에 대한 제한이나 규정을 취소한다.  승낙출자액, 출자방식, 출자기한은 회사 투자자(주주, 발기인)가 스스로 약정하며, 아울러 합영(합작)계약, 회사 정관 중에 명기한다. 각급 상무주무부서는 비준회답 중에 상기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2)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에서 특정 업종의 등록자본 최저한도액에 대해 별도의 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회사 최저 등록자본 제한을 취소한다.  (3) 통지에 열거한 <등록자본 승낙납입 등기제도를 잠시 실시하지 않는 업종>의 최저 등록자본 출자사항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의 결정을 개정하기 전에는 당분간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상술한 등록자본 승낙납입 등기제도를 잠시 실시하지 않는 업종 외에는 등록자본 납입상황을 더는 심사하지 아니한다.  (4) 2014년 3월 1일 전에 이미 비준한 외국인투자사항은, 투자자는 계속 기존의 계약, 정관에서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투자자는 상무주무부서에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각급 상무주무부서는 이 통지의 관련 요구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5) 회사 등록자본과 투자총액의 비율은 여전히 <중외합자 경영기업 등록자본 및 투자총액 비율과 관련한 잠정규정> 및 기타 현재 유효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국가에서 발전을 장려하는 내외자프로젝트확인서>와 <외국인투자기업 갱신 장비, 기술 및 부품 수입증명서>의 취급업무는 여전히 《외국인투자기업의 <국가에서 발전을 장려하는 내외자프로젝트확인서> 취급 관련문제에 대한 상무부의 통지》(상자발 [2006] 201호)에 따라 집행한다.  (6) 결정은 <중외합자 경영기업 합영각방 출자에 대한 몇 가지 규정>과《<중외합자 경영기업 합영각방 출자에 대한 몇 가지 규정>에 대한 보충규정》을 폐지시키고 <중외합자 경영기업법 실시조례>와 <중외합작 경영기업법 실시세칙>,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중의 등록자본 출자내용을 수정하였으므로 각급 상무주무부서에서 열심히 집행하기 바란다.   1. 외자통계 관련   (7) <외국인투자 통계제도>에 따라 계속 실수자본을 근거로 외자통계업무를 처리한다. 상무부는 외자관리정보시스템 “심사비준 및 증서발급” 항목 중 “투자 각방 및 출자” 모듈에 투자자의 출자진도 및 기한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각급 상무주무부서는 비준증서를 발급할 때 시스템에서 관련 내용을 입력하여 이를 투자자의 출자상황을 파악하고 실제 외자유치데이터를 집계하는 근거로 하여야 한다.  (8) 실제 출자 후 회사는 <회사법>, <중외합자 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중외합작 경영기업법 실시세칙> 등 법률, 법규의 요구에 따라 투자자에게 출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자증명서에는 회사명칭, 성립일자, 등록자본, 투자자(주주)의 명칭이나 성명, 출자방식, 납입 출자액 또는 합작조건의 내용, 출자액 납입일자, 출자증명서의 번호와 발급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9) 회사는 투자자에게 출자증명서를 발급한 후 30일 내에 직인을 날인한 출자증명서 부본을 소재지 상무주무부서에 송부하고 동시에 출자내용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자증명서류에는 아래의 형식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가. 투자자가 현찰 또는 다국적 인민폐로 출자를 하는 경우 기업은 은행의 입금증빙(또는 동등한 증명효력을 가진 문건)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물로 출자를 하는 경우 현물 인도 및 검수증명, 가치 평가의거, 권리소속증명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무형자산으로 출자를 하는 경우 상황에 비추어 특허증서, 특허등기부, 상표등록증 등, 무형자산의 출자와 관련한 양도계약, 평가보고서, 자산가치에 대한 투자 각방의 확인문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경내 인민폐로 투자를 하는 경우 이익 원천기업의 비준증서, 이익취득연도 재무제표, 이익배당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서, 또는 청산소득 원천기업의 청산보고서, 또는 지분양도소득 기업의 비준증서, 지분양도 관련 이사회의 결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급 상무주무부서는 출자증명서에 기재한 출자방식, 출자금액 및 통화 종류(또는 합작조건의 내용), 출자시간 등에 따라 실제 투자통계를 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집행하는 과정에 봉착한 문제는 지체 없이 상무부(외자사)와 연락하기 바란다.  상무부  2014년 6월 17일 |  | **商务部关于改进外资审核管理工作的通知**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及新疆生产建设兵团商务主管部门：  为贯彻落实《国务院关于印发注册资本登记制度改革方案的通知》（国发[2014]7号，以下简称《通知》）和《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国务院令第648号，以下简称《决定》），商务部就部分外商投资管理工作提出改进措施，现通知如下：  一、关于外资审核  （一）取消对外商投资（含台、港、澳投资）的公司（以下简称公司）首次出资比例、货币出资比例和出资期限的限制或规定。  认缴出资额、出资方式、出资期限由公司投资者（股东、发起人）自主约定，并在合营（合作）合同、公司章程中载明。各级商务主管部门应在批复中对上述内容予以明确。  （二）除法律、行政法规以及国务院决定对特定行业注册资本最低限额另有规定外，取消公司最低注册资本的限制。  （三）《通知》所列《暂不实行注册资本认缴登记制的行业》的注册资本出资事项，在有关法律、行政法规以及国务院决定未修改前，暂按现行规定执行。  除上述暂不实行注册资本认缴登记制的行业外，不再审核公司注册资本的缴付情况。  （四）2014年3月1日前批准的外商投资事项，投资者应继续按原合同、章程的约定履行出资义务；如需变更，投资者可向商务主管部门提出申请，各级商务主管部门应根据本通知的有关要求进行审核。  （五）公司注册资本和投资总额的比例仍需符合《关于中外合资经营企业注册资本与投资总额比例的暂行规定》及其他现行有效规定。《国家鼓励发展的内外资项目确认书》和《外商投资企业进口更新设备、技术和配件证明》的办理工作仍按《商务部关于办理外商投资企业<国家鼓励发展的内外资项目确认书>有关问题的通知》（商资发[2006]201号）执行。  （六）《决定》废止了《中外合资经营企业合营各方出资的若干规定》及《〈中外合资经营企业合营各方出资的若干规定〉的补充规定》，修订了《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条例》和《外资企业法实施细则》关于注册资本出资的内容，各级商务主管部门应认真遵照执行。  二、关于外资统计  （七）根据《外商投资统计制度》，仍以实收资本为基础开展外资统计工作。商务部将在全口径外资管理信息系统“审批发证”项下的“投资各方及出资”模块中增加投资者出资进度及期限的内容。各级商务主管部门在发放批准证书时应在系统中录入相关内容，以此作为了解掌握投资者出资情况及汇总实际使用外资数据的基础。  （八）实际出资后，公司应当按照《公司法》、《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等法律法规的要求向投资者签发出资证明书。出资证明书应载明：公司名称；成立日期；注册资本；投资者（股东）名称或姓名、出资方式、缴纳出资金额或提供合作条件的内容；缴纳出资日期；出资证明书的编号和核发日期。  （九）公司向投资者签发出资证明书后，应于30日内将加盖公章的出资证明书副本抄报所在地商务主管部门，并提供与出资内容相关的证明材料。  出资证明材料主要包括（但不限于）以下形式：  1.投资者以现汇或跨境人民币出资的，企业需提交银行进账单（或具有同等证明效力的文件）及报文；  2.以实物出资的，需提交实物移交与验收证明、作价依据、权属证明等；  3.以无形资产出资的，需视情况提交专利证书、专利登记簿、商标注册证等，与无形资产出资有关的转让合同，评估报告、投资各方对资产价值的确认文件等；  4.以境内人民币投资的，需提交利润来源企业的批准证书、产生利润年度财务报表、有关利润分配的董事会决议；或清算所得来源企业清算报告；或股权转让所得企业的批准证书、与股权转让相关的董事会决议。  各级商务主管部门按出资证明书载明的出资方式、出资金额及币种（或提供合作条件的内容）、出资时间等进行实际投资统计。  本通知执行过程中如有问题，请及时与商务部（外资司）联系。  商务部  2014年6月17日 |